

#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

■ 당첨자 제출서류 [서류제출 기한 : 08.24(월) ~ 08.30(일) 10:00~16:00 / 장소 : 견본주택]

서 류		체크사항
기본서류	신분증 사본(본인)	본인확인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)
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본인)	용도 : 아파트 계약용 ( <b>본인발급에 한함</b> ), 본인에 한하여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가능
	인감도장(본인)	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(인감도장 일치여부 확인)
	주민등록표등본(본인)	발급일 · 전입일 · 주민번호 · 세대구성 사유 · 배우자 확인 등 ( <b>모든정보표시발급</b> )
	주민등록표초본(본인)	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확인 ( <b>모든정보표시발급</b> )
	가족관계증명서(본인)	세대구성원 확인 ( <b>상세발급</b> )
	출입국사실증명원(본인)	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개월 동안 계속하여 90일 초과 국외거주사실 확인
	배점기준표	[양식] 견본주택 비치
추가서류 (해당자에 한함)	주민등록표등본(배우자)	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( <b>모든정보표시발급</b> )
	복무확인서(본인)	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해당주택건설지역(속초시 및 강원도)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
	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)	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 <b>상세발급</b> )
	주민등록표초본(피부양 직계존속)	3년 이상 등재 사실 확인 ( <b>모든정보표시발급</b> )
	혼인관계증명서(자녀)	만 18세 자녀를 자녀수로 산정할 경우 ( <b>상세발급</b> )
	친양자/입양관계증명서	입양의 경우 ( <b>상세발급</b> )
	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	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 <b>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</b> )
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[양식] 견본주택 비치
	한부모가족증명서(본인)	한부모 가족으로 5년 경과 유무 확인
제3자 대리인 추가서류	위임장	[양식] 견본주택 비치
	계약자의 인감증명서	용도 : 아파트 계약 위임용 ( <b>본인발급에 한함</b> , 인감도장 일치여부 확인)
	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또는 서명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대리인 본인 확인)
부적격 의심자 추가서류	부적격 사유에 따른 소명서류	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부적격 사유에 따른 소명서류

※ 상기 증명서류는 **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07.30)**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함  
 ※ 상기 서류는 당첨자의 적격 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이므로,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며, 당첨자의 상황에 따라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
 ※ 상기 서류는 '주민등록번호'가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, '상세'발급을 원칙으로 함. 또한, 주민등록표등(초)본에 '과거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', '세대구성일 및 사유',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함

■ 정당계약 체결 안내 [09.01(화) ~ 09.03(목) 10:00~16:00 / 장소 : 견본주택] \*예비입주자의 경우 별도 안내

구분	구비서류
본인 계약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계약금[계약금(1차)]입금증 ※ 계약금 현장 수납 불가</li> <li>계약자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[사전 서류제출기간에 사용한 인감도장(인감날인 대조)]</li> </ul>
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(사전제출대리인과 다른 경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리인의 신분증 / 위임장 견본주택 비치</li> <li>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추가(아파트 계약 위임용, 본인 발급에 한함)</li> </ul>